

휴학의 종류

종류	요건	
	사유	첨부서류
일반휴학	학생의 개인사유 발생으로 인한 휴학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군입대휴학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인터넷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아주 상담·지원센터에 제출 (방문 또는 Fax)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 한 경우	진단서 원본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창업의 사유로 인한 휴학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별도심사

등록휴학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하는 경우,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함

단,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가능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 기준**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재학 중에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중에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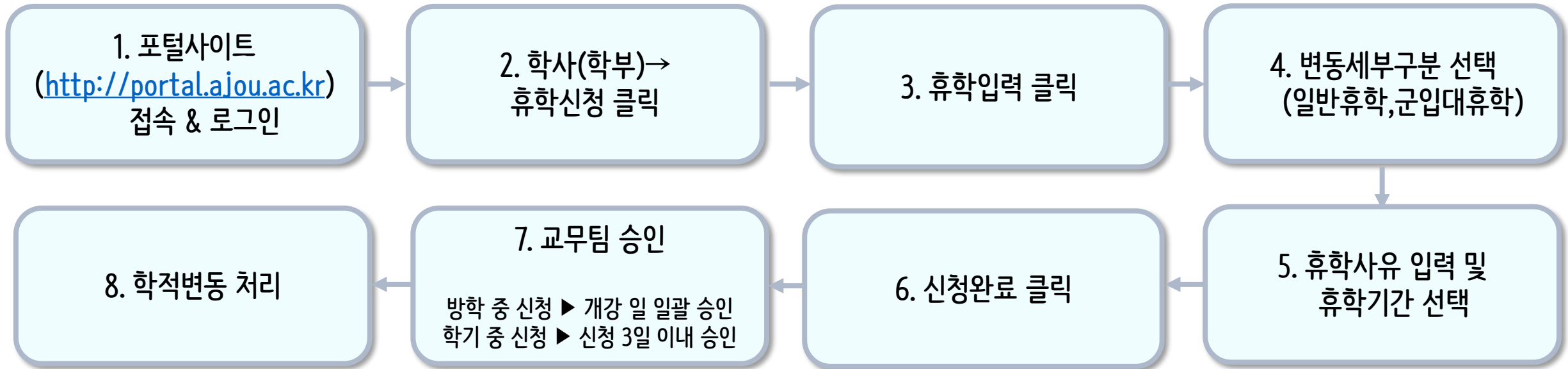
- **등록금 반환액의 책정 기준** 등록금 반환액의 책정 기준(2004년 2학기부터 적용)은 다음과 같다.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은 학기개시일 후엔 반환되지 않음. 자퇴의 경우, 학기개시일 30일,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 **등록금 반환액 기준**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하고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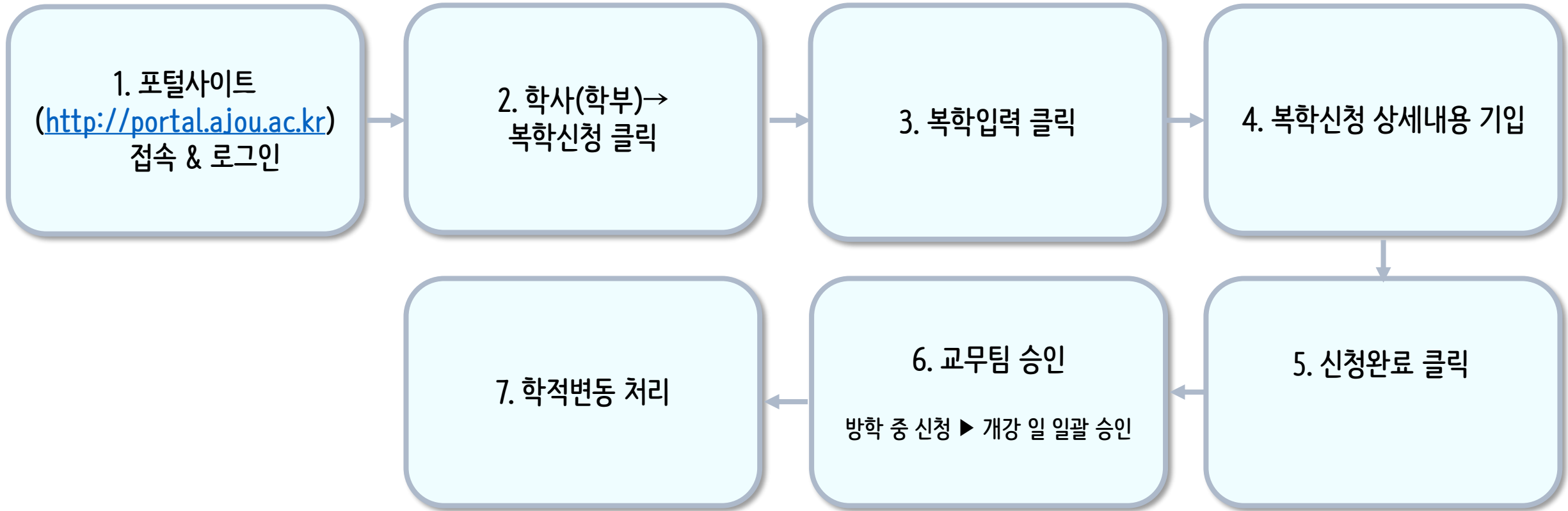
휴학신청 방법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참고사항

1. 일반휴학은 1학년 2학기 부터 신청가능 (단 질병휴학, 군입대휴학은 1학기부터 가능)
3. 질병휴학은 관련서류 지참 후 교무팀 방문하여 신청 (관련서류: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4. 군입대휴학은 교무팀 또는 아주상담·지원센터에 관련서류 필히 제출 (관련서류: 입영통지서)
5. 창업휴학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심사를 거침
6.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별도 신청

복학신청 방법 (일반복학, 군복학)



참고사항

군복학은 교무팀 또는 아주상담·지원센터에 관련서류 필히 제출 (관련서류: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